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0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유용원·이인선·성일종

고동진・김 건・최수진

정성국 · 신동욱 · 조경태

강선영 · 김소희 · 진종오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'12년 약 14.1억개에서 '22년 약 41.2억개로 192%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.

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 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대체배송)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대체배송) 택배서비스
	사업자 및 영업점은 파업 등으
	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
	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
	최소화하기 위하여 「노동조합
	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3조의
	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
	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.